
부록 Ⅱ: 복합금융그룹의 보완적 자기자본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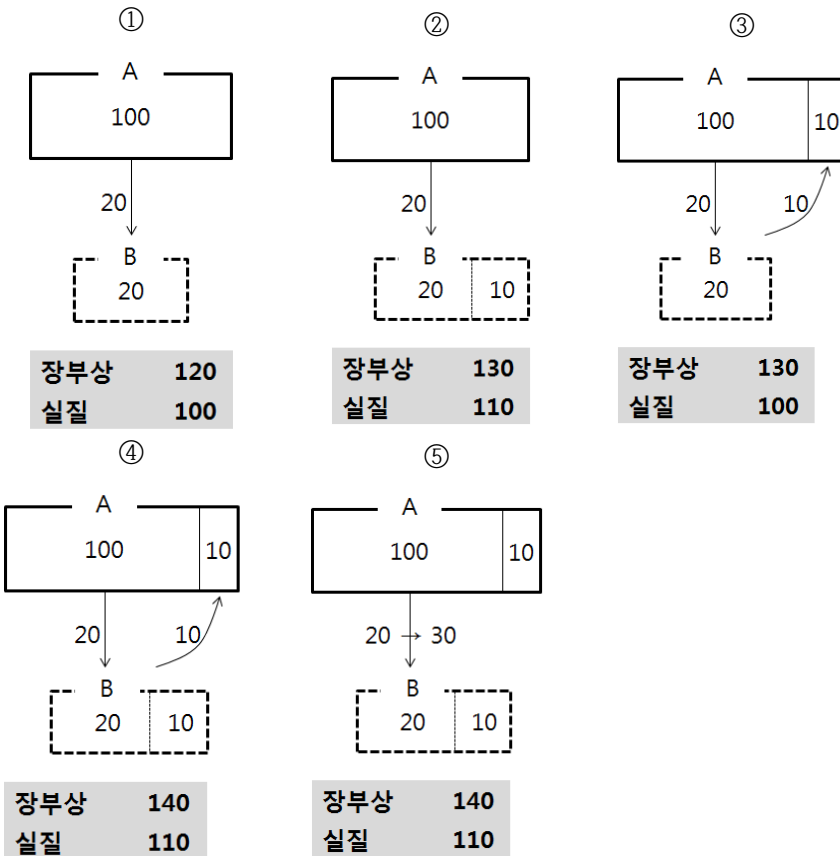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보완적 감독의 핵심은 '보완적 자본적정성 요구량(supplementary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의 계산이다. 보완적 자본적정성 요구량은 그룹 내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합계에서 규제 자기자본 양의 합계 및 그룹 내 출자분을 제외한 것이며 이 수치가 항상 양(陽)의 값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EU의 경우 연결회계방식과 가감방식을 통해 보완적 자본적정성 요구량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복합금융그룹 후보들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으로, 그룹 내 금융회사들이 연결회계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감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복합금융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순합계가 복합금융그룹 내 금융회사의 요구자본량의 합계보다 커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자본 순합계는 복합금융그룹 내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합계에서 그룹 내 금융회사 간 출자분을 제외하여 구한다.

원칙은 이러하나 실제로 한국의 복합금융그룹의 자기자본 순합계를 구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금융회사의 '장부상' 자기자본 합계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룹 내 금융회사 간 출자분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한 소유구조로 인해 까다롭기 때문이다. 금융그룹 내 금융회사 사이에 비금융회사가 끼어 있을 수도 있고, 금융회사들이 결과적으로 순환 출자 관계에 놓여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장부상 자기자본 합계에 그룹 내 출자분을 제외한 자기자본 순합계, 또는 '실질' 자기자본을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의 흐름을 위해 금융회사가 두 개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자(〈부록 그림 Ⅱ-1〉 참조). 모든 그림은 장부상 자본이 100인 금융회사 A가 금융회사 B에게 20을 출자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가장 단순한 ①을 예로 보면, 이 때 두 회사의 장부상 자기자본 합계는 120이고, 이 중 A가 B에게 출자한 20을 제외한 100이 실질 자기자본이 된

다. ②는 ①의 상황 발생 후 B가 사내유보나 외부로부터의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10만큼 늘린 상황이다. 따라서 장부상으로나 실질로나 자기자본이 10 증가한다. ③은 ①의 상황 후 B가 A의 증자에 10을 내놓은 상황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상호출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회사가 세 개 이상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순환 출자의 가장 간단한 형태를 예로 보인 것이다. ③의 경우 장부상으로는 자기자본이 10 증가했으나, B가 내부적으로 사내유보를 통해 증자했거나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증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출자금 10은 B의 부채로 조달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 자기자본은 ①의 100과 다르지 않다.

〈부록 그림 II-1〉 복합금융그룹 자기자본 접근-금융회사 두 개(A, B)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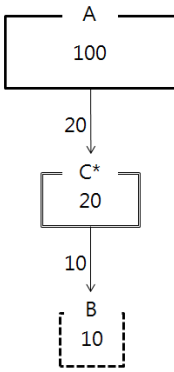


④는 ③과 유사하나, B의 A에 대한 출자금 10이 B의 증자를 통해 조달된 경우이다. 따라서 장부상 자기자본은 $140(=110+30)$ 이고 실질 자기자본은 A의 100과 B의 10을 더한 110이다. 실질 자기자본 110은 장부상 자기자본 140에서 내부 출자분 30을 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⑤는 ④와 장부상이나 실질이나 자기자본의 크기가 같은데, A가 10을 증자하여 B에 대한 출자를 20에서 30으로 늘린 상황이다. ⑤의 경우는 지주회사의 행태로 볼 수 있다. 자회사 B에 비해 규모가 크고 신인도가 높은 지주회사 A가 자본을 조달하여 자회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가 ⑤에 비해 소유구조가 복잡하지만, 가용 자본의 차원에서 보면 둘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복합금융그룹 후보들의 보완적 자본적정성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 중 한 가지는 소유구조 상 금융회사 사이에 비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음의 <부록 그림 II-2>에서는 금융회사 A와 B 사이에 비금융회사 C가 위치할 때의 경우를 살펴본다. 비금융회사 C의 위치상 비금융회사이면서 금융회사들의 지주회사인 ‘혼합금융지주회사’는 아니다. ⑥은 ①에 대응되는 가장 간단한 상황이다. A-C 회사 전체로 보면 장부상 자기자본은 130, 실질 자기자본은 100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 사항은 복합금융그룹이므로 C를 제외한 자기자본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회사만의 장부상 자기자본은 110이고, B의 자본금은 모두 내부적으로 조달 되었으므로 실질 자기자본은 110에서 내부 출자분 10을 제외한 100이다. ⑦은 ③에 대응되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들의 장부상 자기자본은 $115(=105+10)$ 이지만 B에 대한 C의 출자분 10과 A에 대한 B의 출자분 5가 모두 사내유보나 외부 자본 조달이 아니므로 15가 내부 출자분으로 115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⑧은 ④와 유사한 경우로 장부상 자기자본은 $120(=105+15)$ 이고, 실질 자기자본은 105이다. 이는 A의 원래 자본 100과 B의 증자분 5의 합으로 볼 수도 있고, 장부상 자기자본 120에서 내부 출자분 15를 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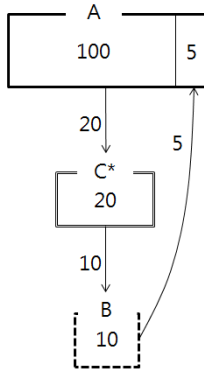
〈부록 그림 II-2〉 복합금융그룹 자기자본 접근-
금융회사 두 개(A, B)와 비금융회사(C) 한 개의 경우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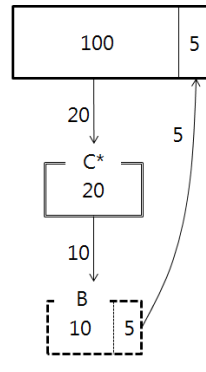
| | |
|-----------|-----|
| 장부상 | 130 |
| 실질 | 100 |
| 금융 장부상 | 110 |
| 금융 실질 | 100 |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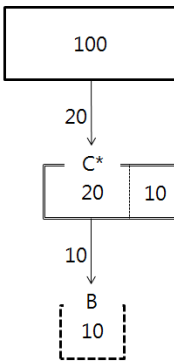
| | |
|-----------|-----|
| 장부상 | 135 |
| 실질 | 100 |
| 금융 장부상 | 115 |
| 금융 실질 | 100 |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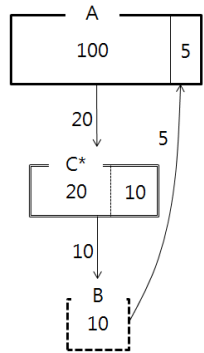
| | |
|-----------|-----|
| 장부상 | 140 |
| 실질 | 105 |
| 금융 장부상 | 120 |
| 금융 실질 | 105 |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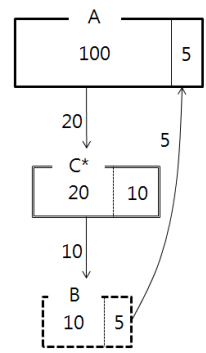
| | |
|-----------|-------|
| 장부상 | 140 |
| 실질 | 110 |
| 금융 장부상 | 110 |
| 금융 실질 | 110-? |

⑩



| | |
|-----------|-------|
| 장부상 | 145 |
| 실질 | 110 |
| 금융 장부상 | 115 |
| 금융 실질 | 115-? |

⑪



| | |
|-----------|-------|
| 장부상 | 150 |
| 실질 | 115 |
| 금융 장부상 | 120 |
| 금융 실질 | 120-? |

⑨~⑪은 더욱 복잡한 상황을 보여준다. 비금융회사인 C가 증자를 한 경우이다. C는 복합금융그룹의 보완적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C의 증자가 B의 출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⑨의 경우 금융회사 A, B의 장부상 자기자본은 110인데, 실질 자기자본을 구하기 위해 110에서 내부 출자분을 얼마를 빼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 번째 대안은 내부 출자분을 B의 자본 10 전체로 보는 것이다. 비금융회사의 존재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이 때 금융회사만의 실질 자기자본은 100으로 ①이나 ⑥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특히 ⑥과 ⑨를 비교해 보면 ⑨에서는 C에 실질적 증자(내부 출자에 의하지 않은 증자)가 있는 점만 다른데, 증자에도 불구하고 실질 자기자본에서 ⑥과 ⑨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C의 증자분 10이 B의 출자에 쓰였다고 본다면 B의 자기자본 10은 온전히 실질 자기자본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번째 대안은 내부 출자분을 B의 자본 중에서 C의 증자분은 제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⑨의 경우에서는 B의 자본 10에서 C의 증자분 10을 제외하면 0이므로, B에 대한 내부 출자분은 없다고 보고 장부상 자기자본 110을 모두 실질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세 번째 대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안의 절충안으로 B에 대한 내부 출자분을 일정 비율, 예컨대 C의 자본 중 A로부터의 출자분의 비율인 2/3를 적용해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질 자기자본은 약 $103.3(=110-10 \times 2/3)$ 이 된다.

⑩은 ⑨의 상황에 순환 출자가 추가된다. ⑦과 비슷한데 C에 증자가 있는 점이 다르다. 금융회사들만의 장부상 자기자본은 ⑦과 마찬가지로 115이다. 115에서 뺄 내부 출자분을 위에서 논의한 세 가지 대안으로 적용해보자. 첫 번째 대안으로는 내부 출자분이 $15(=10+5)$ 이다. 이 경우 실질 자기자본은 100이 되는데, 앞서 언급한 ⑥과 ⑨ 사이와 마찬가지로 ⑩도 ⑦과 장부상이나 실질 자기자본이 모두 같게 된다. C에 증자가 있는데도 이것이 전혀 실질 자기자본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내부 출자분이 B가 A에 출자한 5가 된다. C가 B에 출자한 10은 C의 증자로 충당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만약 세 번째 대안을 적용한다면 내부 출자분은 약 $11.7(=10 \times 2/3 + 5)$ 이 될 것이다.

⑪은 ⑧과 비슷한데, 역시 C에 실질적 증자가 있는 경우이다. 금융회사들만의 장

부상 자기자본은 120인데, 첫 번째 대안대로 내부 출자분 15를 빼면 실질 자기자본은 105로 ⑧과 같게 된다. 두 번째 대안대로라면 내부 출자분은 0이다. C의 B에 대한 출자분 10과 B의 A에 대한 출자분 5가 모두 각각 C와 B의 실질적 증자에 의해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내부 출자분이 $10(=10 \times 2/3 + 5 \times 2/3)$ 이 되어 실질 자기자본은 110이다.

현실적으로 소유구조로 얽여 있는 회사들이 장기에 걸쳐 영업을 하다보면 사내유보에 의하든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기에 의하든 증자를 겪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복합금융그룹 후보들에 대해 보완적 자본적정성을 산정하는 것이 더욱 복잡할 테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첫 번째 대안처럼 과도하게 내부 출자분을 계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참고삼아 한국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자기자본 순합계액과 필요자본의 산출방식을 검토해 보자(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 자기자본 순합계액은 자기자본에서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금융지주회사 등”) 간 출자액을 뺀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등 간 출자액은 단순 합계 방식으로 위의 첫 번째 대안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체계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금융회사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나 이에 대한 출자액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현실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체계 내의 비금융회사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완전 자회사인 경우여서 이러한 제외가 자기자본 순합계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체계 안의 필요자본은 각 금융자회사의 필요자본 합계에 금융지주회사 필요자본을 산정하여 더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필요자본이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상 지주회사는 별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순수 지주회사여야 하기 때문이다. 비금융자회사의 필요자본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데, 대신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 등에 대해 출자한 금액에 대해 요구되는 필요자본이 금융지주회사 필요자본에 포함된다. 비금융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액에 요구되는 필요자본은 비금융자회사 등의 상대적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하여 금융지주회사 필요자본에 포함 적용된다.

한국의 금융지주회사법은 소유구조나 영위 업종에 대한 제한이 많기 때문에 내부 출자분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는 편이다. 그 때문에 지주회사 체계 내 회사들 간 출자분의 단순 합으로 내부 출자분을 구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복합금융그룹을 선정해 보완적 감독을 한다면 현실을 바탕으로 보완적 감독의 의미에 충실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컨대, 자기자본 순합계액 계산 시 내부 출자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유구조나 비금융 회사의 존재를 고려하여 단순 합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내부 출자액을 단순 합으로 계산하면 금융회사의 가용 자본을 과소 산정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에서 ⑥, ⑦, ⑧을 각각 ⑨, ⑩, ⑪과 비교해 보면 금융회사의 가용 자본은 ⑨, ⑩, ⑪에서 더 큰 것이 확실하므로 두 번째 대안이나 세 번째 대안처럼 비금융회사 자기자본 중 내부 출자분을 제외한 부분이 복합금융그룹 자본적정성에 고려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부록 표 II-1〉 은행 영역과 투자서비스 영역 포함 회사 정의

| 금융회사 | 정의 | 출처 |
|-----------------------|---|---|
| credit institution | undertaking the business of which is to take deposits or other repayable funds from the public and to grant credits for its own account | Directive 2013/36/EU Article 4(1)(1) Regulation (EU) No 575/2013 Article 4(1)(1) |
| financial institution | undertaking other than an credit institution or an investment firm, the principal activity of which is to acquire holdings or to pursue one or more of the activities listed in points 2 to 12 and point 15 of Annex I to Directive 2013/36/EU, including: -a financial holding company -a mixed financial holding company -a payment institution within the meaning of Directive 2007/64/EC -an asset management company -but excluding insurance holding companies and mixed-activity insurance holding companies points 2 to 12 and point 15 of Annex I: | Directive 2013/36/EU Article 4(1)(22) Regulation (EU) No 575/2013 Article 4(1)(26) |

〈부록 표 II-1〉의 계속

| 금융회사 | 정의 | 출처 |
|-------------------------------|--|---|
| financial institution | 2. Lending including, inter alia: consumer credit, credit agreements relating to immovable property, factoring, with or without recourse, financing of commercial transactions (including forfeiting) 3. Financial leasing 4. Payment services as defined in Article 4(3) of Directive 2007/64/EC 5. Issuing and administering other means of payment (e.g. travellers' cheques and bankers' drafts) insofar as such activity is not covered by point 4 6. Guarantees and commitments 7. Trading for own account or for account of customers in any of the following: (a) money market instruments (cheques, bills, certificates of deposit, etc.); (b) foreign exchange; (c) financial futures and options; (d) exchange and interest-rate instruments; (e) transferable securities 8. Participation in securities issues and the provision of services relating to such issues 9. Advice to undertakings on capital structure, industrial strategy and related questions and advice as well as services relating to mergers and the purchase of undertakings 10. Money broking 11. Portfolio management and advice 12. Safekeeping and administration of securities 15. Issuing electronic money | Directive 2013/36/EU Article 4(1)(22) Regulation (EU) No 575/2013 Article 4(1)(26) |
| ancillary service undertaking | undertaking the principal activity of which consists of owning or managing property, managing data-processing services, or a similar activity which is ancillary to the principal activity of one or more institutions | Directive 2013/36/EU Article 4(1)(17) Regulation (EU) No 575/2013 Article 4(1)(18) |
| investment firm | any legal person whose regular occupation or business is the provision of one or more investment services to third parties and/or the performance of one or more investment activities on a professional | Directive 2013/36/EU Article 4(1)(2) Regulation (EU) No 575/2013 Article 4(1)(2) Directive 2004/39/EC Article 4(1)(1) |

〈부록 표 II-1〉의 계속

| 금융회사 | 정의 | 출처 |
|-----------------|--|--|
| investment firm | <p>basis 'Investment services and activities' means any of the services and activities listed in Section A of Annex I relating to any of the instruments listed in Section C of Annex I of Directive 2004/39/EC</p> <p>Annex I Section A:</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Reception and transmission of orders in relation to one or more financial instruments (2) Execution of orders on behalf of clients (3) Dealing on own account (4) Portfolio management (5) Investment advice (6) Underwriting of financial instruments and/or placing of financial instruments on a firm commitment basis (7) Placing of financial instruments without a firm commitment basis (8) Operation of 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 <p>Annex I Section C:</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ransferable securities; (2) Money-market instruments; (3) Units in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 (4) Options, futures, swaps, forward rate agreement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securities, currencies, interest rates or yields, or other derivatives instruments, financial indices or financial measures which may be settled physically or in cash; (5) Options, futures, swaps, forward rate agreement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commodities that must be settled in cash or may be settled in cash at the option of one of the parties (otherwise than by reason of a default or other termination event) (6) Options, futures, swap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 relating to commodities that can be physically settled provided that they are traded on a regulated market and/or an MTF; | <p>Directive 2013/36/EU Article 4(1)(2) Regulation (EU) No 575/2013 Article 4(1)(2) Directive 2004/39/EC Article 4(1)(1)</p> |

〈부록 표 II-1〉의 계속

| 금융회사 | 정의 | 출처 |
|-----------------|--|--|
| investment firm | <p>(7) Options, futures, swaps, forward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commodities, that can be physically settled not otherwise mentioned in C.6 and not being for commercial purposes, which have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having regard to whether, inter alia, they are cleared and settled through recognised clearing houses or are subject to regular margin calls;</p> <p>(8) Derivative instruments for the transfer of credit risk;</p> <p>(9) Financial contracts for differences</p> <p>(10) Options, futures, swaps, forward rate agreement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climatic variables, freight rates, emission allowances or inflation rates or other official economic statistics that must be settled in cash or may be settled in cash at the option of one of the parties (otherwise than by reason of a default or other termination event), as well as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assets, rights, obligations, indices and measures not otherwise mentioned in this Section, which have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having regard to whether, inter alia, they are traded on a regulated market or an MTF, are cleared and settled through recognised clearing houses or are subject to regular margin calls</p> | <p>Directive 2013/36/EU Article 4(1)(2) Regulation (EU) No 575/2013 Article 4(1)(2) Directive 2004/39/EC Article 4(1)(1)</p> |

〈부록 표 II-2〉 복합금융그룹 차원에서 인정되는 자기자본 요소

| 금융영역 | 공통 자본 요소 | 근거 조항 |
|---------|--|---|
| 은행/투자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주(Common equity Tier 1 capital): prudential filter로 조정하고 당해연도 손실, 무형자산, 자른 회사에의 보통주 출자분 등을 차감 * 추가적 Tier 1 자본(Additional Tier 1 capital): (순수하게 그룹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될 것을 강조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본 수단 및 주식발행 초과금(share premium accounts) * Tier 2 자본: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본수단과 후순위 채무(subordinated loans), 주식발행 초과금, 위험 가중 위험노출량을 계산하는 회사의 경우 일정 비율의 가산 가능 | Article 50, 61, 71 in Regulation (EU) No 575/2013 |
| 보험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자기자본 요소(basic own fund items): (자산-부채-자사주)와 후순위 채무 * Tier 1과 Tier 2의 구분: 항시 이용가능 여부(permanent availability)와 후순위성(subordination) 모두를 갖추고 있으면 Tier 1, 후순위성만 갖추고 있으면 Tier 2 | Article 94(1), (2) Directive 2009/138/EC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정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조재린,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정봉은, 김유미 2016.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㉞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강민규,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조영현,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조재린,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황진태,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 조영현 2016.2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원,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정원석,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 이선주

-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박춘원,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박선영,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김미화 2015.5
- 2015-7 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7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8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 | |
|--------|--|
| | 전성주, 채원영 2012.12 |
| 2012-4 |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 2013-1 |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 2013-2 |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 2013-3 |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 2013-4 |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 2014-1 |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 2014-2 |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 2014-3 |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 2014-4 |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2014.10 |
| 2015-1 |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류건식, 정원석 2015.2 |
| 2015-2 |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 2015-3 |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 2016-1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 |
|-----|---|
| 26호 |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 27호 |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 28호 |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 29호 |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 30호 |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 31호 |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 32호 |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 33호 |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 | 법인회원 | 특별회원 | 개인회원 |
|------|--|--|--|
| 연회비 | ₩ 300,000원 | ₩ 150,000원 | ₩ 150,000원 |
| 제공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56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이승준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lee@kiri.or.kr)

민세진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경제학 박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 sejinmin@dongguk.edu)

조사보고서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보험그룹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6년 3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35-0 94320
979-11-85691-02-2(세트)

정가 10,000원